

기안용지

1975.7.13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지 412-270	(전화번호 1(2-15)20)	전경구경 전경	조 수함
처리기간	구정장			
시행일자	79.8			
보존년한				
보조 기관	시설관리장	총무과장	이철안서서장 등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2차안업)	
기안책임자	김호성	79.8.13		
경수참	유신조	박안철	공제	김열 (1975.7.13) 등계관
제목	각안찰조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1. 도이415-276 (19.6.25)의 관려사항입니다.			
	2. 상이 예로에 의거 관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이 도로의 2/3으로 차압제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차압제한이 이루어			
	지므로 재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 지정승인 내역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연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마포하당동 2가	1039㎡	연세대 앞
				남침도면표시부합
제2안 (보수안)	도시계획법 제13조			

원안안찰조와 내부결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차압제한이 이루어지므로 재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본 대조필
월 일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 마포구청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지정승인 하겠기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의
 건설부에서 제 11호(11.3.16)의 권령취급에 따라
 이를 승인 합니다.

2. 환계도는 마포구청 도시정비화부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시계획자료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9. 7.

서울특별시

가. 지정승인 개략

구분	지정범	위치	규모	비고
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마포구 마포동 2가길 103942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생략)

제 3 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도시계획 2차장

제후: 동 안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1. 도시 415-276 (29.635) 의 관련 인이다.

2. 사례 제 11호에 의거. 사실 인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별첨
 도시계획도면과 같이 지정승인 하겠기 부로 합니다.

첨부: 도시문서부별 도면 1부 2권

제 4 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문화공보부

제후: 시보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게제 부칙제에 의해
주제 부여가 바뀐다.

가. 시보게제 구분 : 2시

나. 시보게제 설명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승인

다.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첨부 : 기사문 사본 1부

제5번

수신 : 건설부장관

발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도시계획2과장

제목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제 21/호 (19.6.25)로 도시

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된 하포구

하중동역변지에 대하여 별첨 도면 및 기사문과 같이

지정승인 되었기 보고함이다.

첨부 : 기사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6번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 ~~시안~~ ~~시안~~ ~~시안~~

제목 : 환인 날인의의

1. 마포구청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승인 사항을 별첨과 같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총무처 장관에게 관보게제 의뢰하고자

환인 날인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부 보고응답 1부

2. 관보게제 의뢰공문 1부 끝.



제 7 안

수신: 총우체정국

발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법무감영관

제 목: 광복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광복게재의뢰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복게재 구분: 2차

나. 광복게재 건명: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다. 법적 근거: 도시계획법 제 13조

첨부: 2차문 사본 2부

제 8 안

수신: 시민봉사실장

제 목: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통보

1. 도경 415-217 (19. 6. 11) 의 관련 사항인

2. 상기 매체에 의거 증보된 도시계획시설

의 확정지정을 내주어 도이 415-276 (19. 6. 25) 에

의거 지정승인 하였으니 관계 도면은 정제하고

당주게시판에 게시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알감시킬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확정지정

내지 할것

첨부: 2차문 사본 및 도면 2부

제 9 안

제 수신: 구청 참조

제 목: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정승인

415-276 (19. 6. 25) 의 관련 사항이다.

선례

2. 냉기대역에 의거 ~~특정~~ ~~특정~~ ~~특정~~ (여기
자동차 정유장)에 대하여 별첨 기사문 및 도면과
같이 개정승인 하필기 등본과나 인우에 첨부할것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사문 및 도면 1부 (가본)

수신처: 교통부장, 주택부장, 산출과장

마뚝우 하출등 24번지 양철기

